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기관 시설물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정기조사 등〉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15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공기관 시설물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정기조사 등 (안 제15조 의2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호선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4. 25.

다. 회 부 일 : 2025. 4.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산교통공사 근무지에서 직원 간 불법카메라 촬영 사건이 발생하였고, 불법카메라 범죄가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불법카메라 및 불법촬영물 범죄에 대한 방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불법카메라의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불법카메라 또는 불법촬영물을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등 불법촬영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공공기관 시설물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정기조사 등 (안 제15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u>불법카메라 및 불법촬영물 방지 등</u> -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불법카메라의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시설물에서 불법카메라 또는 불법촬영물등을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등 불법촬영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개정안은 공공기관 시설물에 대한 불법카메라의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 시설물에서 불법카메라나 불법촬영물 등을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등 불법촬영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임.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카메라 범죄는 2020년 5,032건에서 2024년 7,257건으로 약 1.4배 증가하는 등 불법카메라 촬영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 공공기관 시설물에서 불법카메라가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공기관 시설물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임.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시설물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함으로써 불법카메라 피해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법카메라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며, 공공기관 시설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나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의 운영이나 경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불법카메라 설치에 대한 정기조사 의무 등을 현행법에 규정하는 것보다 불법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¹⁾에서 규율하는 것이 법 체계적으로 적합할 것으로 보임²⁾.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청사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발견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113호)」이 여성가족위원회에 발의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에 공공기관도 포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

2) 기획재정부 역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의 내용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에 대한 내용은 아니라는 점에서 현행법에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합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불법카메라 및 불법촬영물 방지 등) ①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이하 이 조에서 “불법카메라”라 한다)의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시설물에서 불법카메라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이 조에서 “불법촬영물”이라 한다)을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등 불법촬영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157